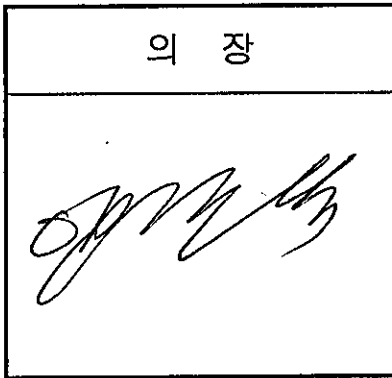


서울 속으로 한발 더!
시민 곁으로 한발 더!

교육감제출 의안 접수 및 회부

의 장



2018. 2.



No. 37

서울특별시의회
(의사담당관)

교육감제출 의안 접수 및 회부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에 따라 의안이 접수되었기에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.

□ 접수의안

| 연번 (의안 번호) | 의 안 명 | 요 지 | 발의·제출 (소관위원회) | 비 고 (발의일)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 (2332) |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 및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책 수요와 지역현안 수요 등을 포함하여 2018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을 증원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. - 정원의 총수 증원 (안 제2조): 증 130명 · 분청·교육지원청·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증원 : 증 105명(6,648명 → 6,753명) ·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원 : 증 25명(460명 → 485명) | 교육감 (교육) | 2018. 2. 2 |
| 2 (2333) |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학교교과교습학원 예능분야와 평생직업교육학원 기예분야 중 일부 교습과정의 실습실 면적과 시설·설비 및 교구 기준이 다른 시·도교육청에 비하여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방향과 다른 시·도교육청과의 형평성에 맞추어 시설·설비 및 교구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규정하고자 함. - 예능분야 학원과 기예 일부 분야 학원의 실습실 면적을 60㎡로 완화함에 따라 실험·실습실의 단위면적을 현행 35㎡에서 30㎡로 개정(안 제4조) -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예능분야의 평생직업교육학원 기예분야 일부 교습과목의 시설규모 기준 완화(안 별표 4) 등 | 교육감 (교육) | 2018. 2. 2 |

□ 향후계획

-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(상임위원회 회부)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안 회부

붙임 : 관련 의안 1부. 끝.

7
15